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나980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나980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19가단3859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2. 7.

판결선고 2022. 1. 11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3. 선고 2019가단3859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711㎡ 중 1/2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).

2. 추가판단

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업무를 하면서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자인 J에게 용역비용을 피고를 통하여 30,000,000원을 받았는바,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,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8, 9,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J이 2009. 3. 24. 피고에게 3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, J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사실, 이 사건 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10. 3.경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J으로부터 받은 30,000,000원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나아가 원고가 위 30,000,000원으로 이

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,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09. 3. 20.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진원, 판사 이상률, 판사 윤동연